

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

1. 고시·공고 명칭 :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1호 칠(옷칠) 전수교육조교 인정 고시

2. 고시·공고 근거법령 :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(인정의 고시 및 통지 등)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(인정의 고시)

3.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

관련법령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실시

4.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(해당 칸에 ■ 표시)

유형	생략사유	해당여부
A	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, 열람, 공청회, 토론회, 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(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단서)	<input type="checkbox"/>
B	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근당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간급을 요하는 경우 (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)	<input type="checkbox"/>
C	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(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)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D	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지구변경 등의 경우 (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, 제4호)	<input type="checkbox"/>

5. 작성자 : 오문선(2133-2616)